

# 태양광 동일필지 분할(쪼개기) 방지 제도 안내문

## 1 동일사업자에 대하여 1발전구역 1계약 원칙

한전 계통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

**'동일사업자 당 1발전구역 또는 1수전구역에 1전력구입계약 체결'** 원칙을 적용받습니다.

신재생 PPA는 예외조항에 따라 사업허가 단위별로 별도계약을 인정하였으나  
'25. 6. 1(일)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부터 동일기준 적용

## 2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?

- 일정규모(90kW) 이상 신재생발전기에 부과되는 계통의무(감시제어장치설치) 회피 또는 접속비용 절감목적의 쪼개기로 인한 소수 사업자의 계통의무 편중을 방지하고,
-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발전기(전력시장거래)와 PPA(한전거래) 체결 발전기 간 접속조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.

## 3 주요 판단기준

- (발전구역 결정)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및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하나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일괄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하나의 발전구역으로 판단합니다.
  - \* 동일 건물 옥상 또는 동일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1발전구역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
- (동일사업자 판단) 하나의 발전구역에 여러 명의로 접속신청이 된 경우에도 규정우회를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타인 명의임에도 동일 사업자 기준을 적용합니다.
  - \* 단순 명의, 가족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, 사업주체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검토함
- (연계조건 결정) 동일발전구역 내 동일사업자가 분할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, 합산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연계전압 및 감시제어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

### 유의사항

- ✓ 복수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각각 접속을 신청하더라도, 상기 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발전사허가 변경 및 계약단위 병합 신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- ✓ 동일 발전(또는 수전)구역 내 동일 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이 1,000kW를 초과할 경우 PPA 체결이 불가하여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.

\* PPA 계약단위 병합 또는 배전용 이용계약으로 변경시, 기존 신청건의 접속순번 인정